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31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 박민규·진선미·황정아

노종면 · 김우영 · 조인철

박희승 • 이학영 • 이정헌

채현일 • 윤종군 • 김영진

김한규·최민희·한민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명의 이사진은 교육부장관 등의 추천을 포함하여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공사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를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이사회 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명한 다"를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9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5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의 수를 고려하여 선

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 3. 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4. 공사 노동조합이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방송의 보도·제작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2명, 그외 노동조합에서 1명을 추천한다.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 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 ⑨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 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 5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 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추천위원회는 사장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소견 발표 진행 등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심의,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기준에 저촉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사장ㆍ이사"를 "이사"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	②
원장이 <u>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u>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
<u>를 받아</u> 임명한다.	<u> 령이</u>
③ 감사는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③이사회의 제청으로
임명한다.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④ 부사장은 사장이 <u>임명한다</u> .	④임명하되 <u>,</u>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②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u>9명</u> 으로	<u>13명</u>
구성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
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
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위원회가 임명한다.
<u>한다.</u>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
	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5
	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신 설>

④·⑤ (생 략)

-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의 수를 고려 하여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합의 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 3. 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 하는 사람 2명
- 4. 공사 노동조합이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방송의 보도ㆍ제작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
 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
 섭대표노동조합에서 2명, 그
 외 노동조합에서 1명을 추천
 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u>⑤</u>・<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⑥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td>서 신설>

<신 설>

<신 설>

⑦ ~ ⑨ (생 략)

⑦ -----

-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 ⑨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장후보자 추보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한다.

⑩ ~ ⑫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신 설>

6. ~ 12.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5의3.제14조의2제1항에따른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구성및 운영

- 6. ~ 1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 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 위원회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추천위원회는 사장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소견 발표 진행

등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충분 한 심의, 토론 등의 과정을 거 쳐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